

기윤실 좋은사회포럼

이주노동자의 삶과 교회^{!!}의 역할

2023년 12월 12일(화) 19시~21시 / 기윤실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F)

사회 | 이상민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발제 | 김혜령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교수

섹알마문 영화감독,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토론 | 김세진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홍천행** 기윤실 간사

한국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과 편견에 맞서고 있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주민을 선교와 전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을 환대하고 이들과 공존하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민의 삶과 현실을 듣고 한국 교회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김현아 사무국장 02-794-6200
cemk.org cemk@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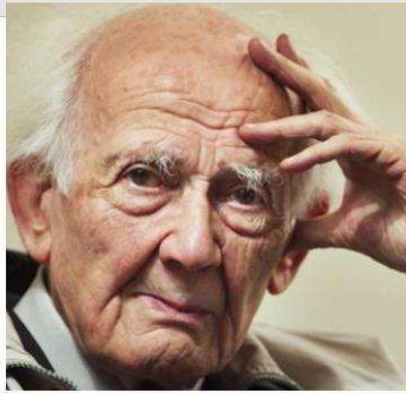
기윤실 좋은사회포럼

이주민 노동자 환대의 윤리적 전략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김혜령 교수

다양한 이주자들

- 유학생
- 결혼이주자
- 이민자(영주권자-시민권 획득/미등록 체류자)
- 난민(전쟁난민, 기후난민, 사상과 종교의 억압을 피해 온 난민 등)
- **이주노동자(등록/미등록)**



지그문트 바우만 (1925~2017)

액체 현대의 글로벌 현상으로서의 이주

액체 현대는 바우만 사상을 대표하는 사회 이론이다. 그는 우리 시대가 '고체 현대'에서 액체 현대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고체 현대란 계획적이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사회를 말한다. 반면 액체 현대란 우연적이고 불확실하고 끝없이 변화하고 예측불가능한 사회를 말한다. 바우만에 따르면, 지난 20세기 후반 서구는 고체 현대 사회에서 액체 현대 사회로 변동했다.

무엇이 이러한 액체 현대 사회를 가져왔을까. 바우만은 세 차원을 주목했다. 먼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삶은 지구적 현상이 됐다. 또한, 국민국가적 수준에서 복지국가가 후퇴하고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일자리 등 우리 삶의 불안정성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생활에 소비가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변덕스러운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됐다.

두 번째는 '여행자와 방랑자'다. 이 개념들은 액체 현대의 승자와 패자를 설명하기 위해 주조한 것이다. 여행자란 세계화와 정보사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현실 및 가상의 세계사회를 무대로 해 살아간다. 반면 방랑자는 세계화와 정보사회의 그늘에서 생존해야 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주 낮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타국으로 이주한다. 여행자와 방랑자는 액체 현대가 가져온 새롭고 낯선 풍경이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081009380005918>

배앗긴 논의 주도권

- "이민 정책은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를 지났고,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 "추진하려는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아주는 게 아니다",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정부가 관리·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
- "인도주의, 다양한 문화 유입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 "유럽은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를 운영한 원죄로 식민지 국민을 오는 대로 받았던 역사가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섬나라라고, 식민지 원죄도 없다. 유럽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필요한 인재를 국익의 관점에서 받을 수 있다"
- 한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과 함께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와 난민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이 이날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특정 권역 내에서만 일터를 옮길 수 있게 지역 제한을 둔 정부 정책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의 견서를 제출 - "기존 사업장 변경 제한 정책이 국내외 인권 기구로부터 비판받고 폐지할 것을 권고받는 상황"

daum 디지털타임스

한동훈 "이민정책, 선택 아닌 필수... 안하면 국가소멸"

한기호 | 입력 2023. 12. 6. 20:1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제언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이민정책, 선택 아닌 필수... 안하면 국가소멸" \(daum.net\)](https://www.daum.net)

UN 핵심 국제인권조약 9개 중 8개를 비준 및 가입한 대한민국

이주노동자권리협약 (2003) – 대한민국 미가입

- 대상자는 ? : 합법 &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 (단, 외국인 학생이나 산업연수생 제외)
- 합법과 불법체류 노동자 각각의 권리 구분
- 비차별 평등(7조), 부적법 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향유할 권리(8~35조), 적법 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향유할 권리(36~56조), 국경 노동자 등 특정 분야에 속하는 노동자가 향유할 권리(57~63조), 그리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적 이주를 인도적이고 적법한 상황을 촉진하는 조치(64~71조)에 관한 실제규정과 협약의 적용과 이행 및 실시기관을 정하는 규정(72~78조), 다른 협약과의 관계와 권리요구에 관한 규정(79~84조) 및 협약의 효력과 해석 등의 최종조항(85~93조)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현 정부 이민 정책의 윤리적 지평과 그 범위

- 게으른 진보민주정치의 틈 노리기
 - 무질서보다는 나쁜 질서가 낫다!?
 - 자기 & 우리를 지키는 이기성을 윤리적 가치로 부각 (윤리적 이기주의)
 - 능력주의와 공정한 정의 담론 등에 업기
- 좁은 의미의 공리주의 : 국가 혹은 국민에 한정된 '功利' utility – 공리의 보편성 상실
- 신자유주의 체제 내의 교환 & 투자 윤리 : 일방적 희생 X, 상호 이득 혹은 원주민 이익의 우선성

전략 : 인도주의와 국익을 대립적 가치이자 양자 택일의 과제로 제한
효과 : '순진하고' '비현실적인' '대책 없는' '위험한' 인도주의 만들기

이주민 환대를 위한 윤리적 전략 1

현 정부 이민 정책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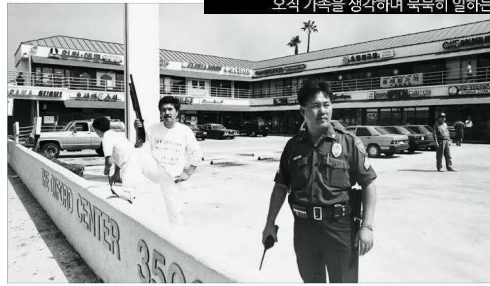
설득 대상 : 윤리적 이기주의자

1) 거짓 정보나 편견을 수정할 수 있는 바른 정보 제공

- 이주민 노동자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연구 필요
 - 인구 증가 (노동력/소비력/재생산력)
 - 문화교류 & 외교
- 이주민에 대한 막연한 위기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할 정보와 연구 필요
 - 타국가와 비교한 이주민 수
 - 이주민 범죄율 & 범죄 발생 원인 및 특징
 - '복지 수혜'의 부당성에 대한 통계 (이주민의 복지 수혜 vs 기여)

2) 윤리적 이기주의의 전제 : '역지사지'로의 호소

- 자신과 가족의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욕망과 용기의 보편성
- 대한민국 이주 노동자가 받은 차별 상기하기
 - 가족의 복지를 위해 유예된 이주 노동자의 삶(현재&여기)
 - 인권 "어느 누구의 삶도 임시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
- 구별짓기 : 2등 시민을 깔고 1등 시민 되기!



3) 주류 질서 중심의 법과 제도, 그 운영 비판

- 불법과 편법을 조장하는 불완전하고 부정의한 법 (산업연수제-고용허가제, 기존사업장 변경 제한 정책)
- 감시와 처벌의 미비
- 저임금, 최악의 노동상황을 방치하는 시민사회



"이주노동자 숙소 30%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 연합뉴스 (yna.co.kr)



최근 이주노동여성들이 사밀한 사건의 발생한 경기도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 구조 숙소. [이주노동단체 제공]

현장] 비닐하우스가 집, 화장실은 고무대야...외국인 노동자 숙소 가보니

월 180만 원 중 20만 원 숙소비로 공제...불법 가설건축물 사용 금지했지만 실효성 의문

2021.02.25(목) 13:17:04

[비즈한국]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한 농지. 이곳에는 농작물 대신 조림패널이 들어선 비닐하우스가 있다. 캄보디아인 20대 여성 노동자 마리 씨(가명)가 생활하는 숙소다. 마리 씨는 지난해 5월 근처 비닐하우스 농가에 취업해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우스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는 주택이 아닌 '임시 주거시설'을 숙소로 쓰기로 하고 이곳에 왔다. 마리 씨가 받는 임금은 법정 최저 수준인 시간당 8590원(2020년 기준), 한 달에 약 180만 원을 벌며 20만 원을 기숙사비로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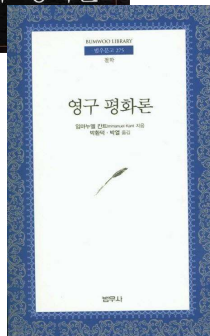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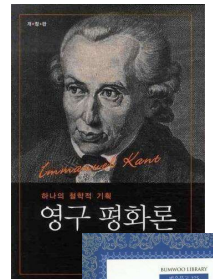
이주민 환대를 위한 윤리적 전략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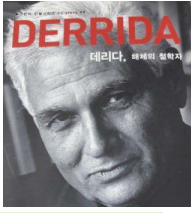
큰 윤리로서 이주민 노동자 환대의 윤리적 지평 만들기
“인간 개인과 집단의 이기성”을 인정하고 넘어서기

칸트 코즈머폴리터니즘의 한계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애가 아니라 권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호란 외국인이 타국 땅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대적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권리를 가리킨다. 그 국가의 성원은, 외국인의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 아니면, 그 외국인을 추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외국인이 타국 땅에서 우호적으로 행동하는 한 그를 적대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외국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님의 권리’가 아니라 ‘방문의 권리’인바, 이 권리는 지구의 표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권리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서로 교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모든 인간에게 속해 있는 권리다. 지구의 표면은 둥글며, 인간이 이 지표면에 골고루 분산되어 살기는 불가능하고, 결국은 공존하면서 서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고, 따라서 개인은 어느 누구든 지구상의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리를 자기도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구평화론, 범우사, 60-61.





자크 데리다 : 관용의 조건으로서의 환대

• 관용(=조건적 환대=초대의 환대) vs 순수한 환대(=방문의 환대=무조건적 환대)

우리는 초대받지도 않은 자들을, 절대적으로 낯선 방문자로서 도착한 자들을, 즉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고 없이 찾아온 자들을 따지거나 거절하지 않고 마치 미리 개방되어 있었던 것처럼 문을 열어 환대하는 특수한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환대는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방문객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에 [방문의 환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방문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코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이 하나도 없는 환대, 확실한 안전 보증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환대가 진정한 의미의 환대일까요? 다시 말해, 낯선 타자의 흑시 모를 위협으로부터 미리 보호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미리 갖추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환대가 진정한 의미의 환대일까요? 물론, 다시 한 번 인정하지만, 우리를 타자로부터 보호해주는 면역을 제거할 경우는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를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적 환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개념 정의상, 우리는 [무조건적 환대]를 현실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조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아무리 [무조건적 환대]를 미리 준비하고 조직하려고 해도, 우리는 환대의 방법이나 범위를 이미 우리의 현실 수준을 고려하여 정해 놓을 수밖에 없기에, 결국 그것은 [조건적 환대]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무조건적 환대]가 현실이 되기에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니 솔직히 거의 완전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나는 이 [순수한 환대]라는 개념이 어떤 법적 지위나 정치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국가도 [순수한 환대]를 법률에다 기입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환대]를, [환대 그 자체]를 최소한 사유해보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환대]라는 말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공유할 없으며, (국가의 의례와 법규, 규범, 국내적 관례나 국제적인 관례로 이루어지는) 하위의 다양한 [조건부 환대]의 규준조차 정할 수 없을 겁니다.

지오반나 보라도리, 『테러시대의 철학 - 하버마스, 데리다와의 대화』 중에서

폴 리콥르 : 윤리와 도덕의 변증법

• 리콥르의 전략 : 윤리와 도덕의 구분 & 둘을 연결하는 '실천적 지혜' (양자택일 지양)

- 윤리 ethics :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학

궁극적인 윤리적 목적은 ' 좋음 ' 혹은 ' 좋은 삶 '

=> 리콥르 : " 정의로운 제도에서 타인과 함께, 타인을 위한 (자기의) 좋은 삶 "

- 도덕 moral :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

이성의 본성상 주어진 도덕법(의무)과 도덕법을 따르는 능력으로서의 ' 자율 '

=> 리콥르 : 도덕법의 의무는 " 정의로운 제도에서 타인과 함께, 타인을 위해 좋은 삶 "을 살고자 하는 윤리적 욕망에 토대를 둔다.

- 실천적 지혜 practical wisdom : 도덕(의무)에 대한 윤리학(좋은 삶)의 우위 속에서 둘을 연결하여 현실의 문제를 풀어 내기

=> 리콥르 : " 실천적 지혜는 배려가 요구하는 예외를 가장 충족시키면서도, 규범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위반하는 행동을 창안하는 것이다. "

[이주민 환대를 위한 윤리적 전략] 실천적 지혜를 추구하는 윤리학

- (1) 윤리적 이기주의 인정 : 선주민의 권리와 선주민 사회의 질서 지키기
- (2) 무조건적 환대(의 의무)에 대한 인간의 사유 능력 인정 : 이주민에게 동등한 권리 주기
- (3) (1)과 (2)사이의 갈등에서 약자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합의(가장 좋은 조건적 환대)를 도출하는 실천적 지혜로서의 윤리학



이주노동자 실태와 과제

섹알마문 (이주노동자 수석부위원장)

왜 사람들은 '이주'할까요? '강요된' 이주는 무엇일까요?

(국제)이주 : 자기가 나고 자란 삶의 터전을 떠나 다른 지역(국가)으로 가서 일하거나 살아가는 것

부자나라, 가난한 나라
경제 약탈, 세계적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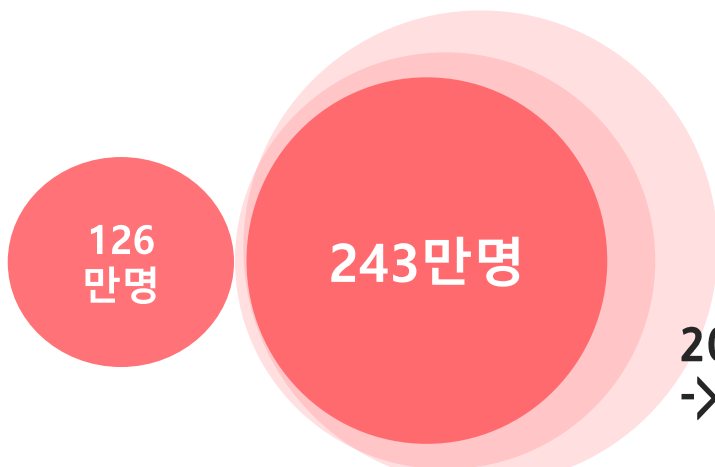
실업, 빈곤의 악순환

일 자리를 찾고, 빈곤 탈출을 위해
도시/부국으로 이주

생존을 위해 강요된 이주

- 지구촌 78억 인구 중 약 3억명(약4%), 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이주 (2020)
-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에서 해외 이주민이 40%이상 증가
-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2022년 전 세계 난민 1억명 돌파

한국 사회 전체 이주민 현황



전체 이주민 숫자는
꾸준히 증가 중
(저출생 고령화, 노동력 및 인구 감소,
한국경제 규모, 문화 소프트파워 등)

2010년 126만명 -> 2020년초 250만명
-> 2023년 243만명 (10년사이 2배 증가)

전체 이주노동자 약130만 명, (미등록 이주민 42만)
(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제(H-2), 동포비자(F-4), 선원취업(E-10), 예술행(E-6),
결혼이주민(F-6), 유학생(D-2, D-4), 영주자(F-5) 등)

*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 조사 상의 '취업자' 는 84만명. 여기에 미등록자 포함하면 대략 130만 명이 됨.

한국 사회 전체 이주민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
총 계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2,433,318
중 국	1,101,782	894,906	840,193	849,804	912,697
한국계	(701,098)	(647,576)	(614,665)	(602,907)	(617,656)
베 트 남	224,518	211,243	208,740	235,007	270,704
태 국	209,909	181,386	171,800	201,681	200,491
미 국	156,982	145,580	140,672	156,562	166,231
우즈베키스탄	75,320	65,205	66,677	79,136	84,992
필 리 핀	62,398	49,800	46,871	57,452	61,841
러 시 아 (연 방)	61,427	50,410	48,680	56,995	66,000
몽 골	48,185	42,511	37,012	53,038	53,070
인 도 네 시 아	48,854	36,858	34,188	50,841	54,808
캄 보 디 아	47,565	41,405	41,525	49,240	54,448
네 팔	42,781	39,743	36,903	47,865	60,693

일 본	86,196	26,515	28,093	46,741	51,133
카 자 흐 스 탄	34,638	29,278	29,616	41,840	45,080
미 얀 마	29,294	26,412	26,096	33,275	38,804
캐 나 다	26,789	21,794	22,830	27,705	27,892
(타 이 완)	42,767	19,444	18,554	25,417	31,932
스 리 랑 카	25,064	22,466	20,291	24,912	28,149
방 글 라 데 시	18,340	16,823	16,426	21,928	25,301
호 주	15,222	7,913	7,591	17,819	12,191
파 키 스 탄	13,990	12,842	12,410	14,460	15,748
인 도	12,929	10,892	11,542	14,419	16,225
싱 가 포 르	8,003	824	2,225	11,178	4,643
말 레 이 시 아	14,790	5,470	5,053	9,528	11,821
기 타	116,913	76,355	82,793	119,069	138,424

3개월 이상 등록 이주민 체류자격 현황(2023.8)

계	문화예술 (D-1)	유 학 (D-2)	일반연수 (D-4)	종 교 (D-6)	상사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교 수 (E-1)
1,291,480 외국국적동포 521,449	26	138,929	61,166	1,376	1,103	7,299	2,349	1,972
	회화지도 (E-2)	연 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계절근로 (E-8)	비전문취업 (E-9)
	13,727	3,846	206	224	4,194	33,973	15,969	286,957
	선원취업 (E-10)	방문동거 (F-1)	거 주 (F-2)	동 반 (F-3)	영 주 (F-5)	결혼이민 (F-6)	방문취업 (H-2)	기 타
20,061	107,596	50,789	26,822	182,337	138,857	3,316	188,386	

취업비자 이주민 국가별 현황(2023.8)

계	중 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 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514,445	101,027	63,371	45,053	50,370	44,657	33,271	28,333
	태 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 국	몽 골	카자흐스탄
	27,317	23,939	23,567	14,943	9,436	5,338	5,222
	파키스탄	동티모르	인 도	남아공	영 국	키르기즈	기타
	5,353	3,781	3,287	3,211	2,725	2,456	17,788

3개월 이상 등록 이주민 체류자격 현황(2023.5)

계	문화예술 (D-1)	유 학 (D-2)	일반연수 (D-4)	종 교 (D-6)	상사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교 수 (E-1)
1,255,608	42	141,862	62,644	1,431	1,123	7,166	2,273	1,996
	회화지도 (E-2)	연 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계절근로 (E-8)	비전문취업 (E-9)
	13,735	3,876	213	230	3,946	28,814	9,794	271,975
	선원취업 (E-10)	방문동거 (F-1)	거 주 (F-2)	동 반 (F-3)	영 주 (F-5)	결혼이민 (F-6)	방문취업 (H-2)	기 타
	19,110	103,788	47,514	25,527	181,015	137,479	101,844	88,211

취업비자 이주민 국가별 현황(2023.5)

계	중 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 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489,469	102,621	56,256	42,404	44,381	41,641	32,676	25,360
	태 국	우즈베키스 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 국	몽 골	카자흐스탄
	26,327	23,486	22,971	14,483	9,206	5,220	5,177
	파키스탄	동티모르	인 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 국	키르기즈	기타
	5,083	3,553	3,180	3,055	2,657	2,468	17,264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업무 유형별 현황

(2023.8.31. 현재, 단위: 명)

구 분	총 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기타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514,445	63,850	446,921	3,674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 전문인력 (2023.8.31. 현재, 단위: 명)

총계	단기취업 (C-4)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63,850	3,636	1,990	14,437	3,889	207	224	4,567	34,900

· 단순기능인력 및 기타 (2023.8.31. 현재, 단위: 명)

총계	계절근로 (E-8)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	관광취업 (H-1)
450,595	20,260	302,102	20,491	104,068	3,674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구 분	총 계	거주 (F-2)	재외동포 (F-4)	영주 (F-5)	결혼이민 (F-6)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 체류외국인	899,114	51088	524686	182,571	140,769

이주노동자 도입과 제도의 변천사

이주노동자 도입

대략 1987년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 구조조정으로 기업 해외이전, 임금인상, 소위 3D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업종 인력부족, 아시안게임/올림픽 거치며 관광비자 등으로 온 동남아 출신 이주노동자 고용

산업연수생제 실시 1994

중소영세업체 요구에 따라 동남아 중심으로 한국의 선진기술 연수 명목으로 이주노동자 수용, 중소기업에서 여권압류, 저임금, 산재, 폭언/폭행 등 노동권/인권사각지대에서 일시킴

고용허가제 실시 2004

산업연수생제 대신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현재 16개 동남아, 서남아 국가에서 이주노동자 도입 중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 무권리의 일회용 노동자 (1)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노동적 성격

- 사업장 변경 금지, 극단적 종속 강화

: 사업주에게 계약 갱신 권리가 있음. 사업주의 허용 없으면 사업장 변경 못함.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의 경우에도 노동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 어렵게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3개월 내에 구직하지 못하면 비자를 잃게 됨.

: 구인 사업장 명단을 주던 방식에서, 사업장에 구직 노동자 명단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 고용센터에서 1주일에 1-2번 노동자에게 문자만 보내줌. 노동자는 내내 문자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음.

: 임금문제 상담과 더불어 가장 많은 상담 내용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 무권리의 일회용 노동자 (2)

밥먹듯이 발생하는 임금 체불

-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음. 그러나 사업주들은 초과근로 수당을 주지 않거나, 10시간 일해도 8시간 임금만 계산해주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 체불을 하고 있음. 2015년 500억 규모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액수가 2020년에는 1200억을 넘었음. 해마다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어느 캄보디아 농업노동자는 2020년에 3년치 임금 약 5천 만원이 체불되어서 진정을 냈으나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음.

외국인 근로자 노동현장 인권침해 사례

- 미얀마 근로자 A씨(39)**
맘대로 월급 깎고 내역 안 알려줘...
오른손 다치자 "원손 있잖아"
- 베트남 근로자 B씨(38)**
"괜찮아 사인해" 이면계약서 쓰고
"연차수당 못 줘" 발뺌
- 방글라데시 근로자 C씨(30대)**
월급 260만원 주기로 해놓고
매월 80만원 임금 체불
- 방글라데시 근로자 D씨(20대)**
공장 사장, 아들에게 폭행...
"한국어 몰라 고소 못 해"

그라픽 | 이자혜 디자이너



<최근 5년간 임금체불 사건 근로자 수 현황>

(단위 : 명)

	전체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비율
2017	326,661	23,885	7.3%
2018	351,531	28,021	8.0%
2019	344,977	31,904	9.2%
2020	294,312	31,998	10.9%
2021	247,005	29,376	11.9%
2022.7월	136,555	16,119	11.8%

<최근 5년간 임금체불 사건 체불임금 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전체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비율
2017	1,381,065	78,370	5.7%
2018	1,647,197	97,227	5.9%
2019	1,721,703	121,682	7.1%
2020	1,583,014	128,771	8.1%
2021	1,350,452	118,351	8.8%
2022.7월	769,092	70,427	9.2%



한국일보
**캄보디아인 노동자
 초은 토미코씨의 노동 환경**

농어촌 '마을 노비' 전락한 코리아 드림(한국일보 2018.2.20)

사례로 보는 임금체불 문제

캄보디아 노동자 A씨는 2015년 6월 입국, 경기도 한 농장에서 4년 8개월간 일하고 임금은 950만 원이 전부. 최저임금으로만 따져도 체불임금의 규모는 6000여 만 원. 이주인권단체에 도움을 청하자, 사업주는 기숙사 방문을 부수고, A씨가 기록한 근무시간, 급여 내역 등 자료를 불태움. 이로 인한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업주는 벌금형 처벌. 노동청에서는 체불임금 3,700만원으로 확인. 사업주는 벌금. 돈이 없다고 버텼음. 사업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음. 사업주는 땅을 팔아 주겠다고 했으나, 이미 땅은 예전에 처분. 현재 사업주는 자취를 감췄음.

1. 저임금, 임금떼먹기, 노동시간 기록 없음/불인정
2. 임금체불 구제 제도의 취약
 - 임금체불 보증보험(400만원 상한)
 - 대지급금제도 (농어업 5인 미만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
 - 민사소송
3. 이주노동자로서 체불 해결될 때까지 체류 어려움
 - G-1비자 제도, 취업할 수 없음



사례로 보는 임금체불 문제

경북 영천의 한 무허가 파견업체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들을 지역 양파, 마늘 농장 등에 하루 9시간 이상 근무하게 하고는 급여 대신 '종이쿠폰'을 지급하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음.

200여명에 대해 4억여원의 임금도둑질을 한 것.

- (뉴스민, 2019.12.10)

인정된 체불임금은 25명, 1억5천만원. 이후 사업주는 고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음. 2021년 9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 무권리의 일회용 노동자 (3)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 퇴직금 문제

-2017년에 노동부가 만든 '숙식비 징수 지침' 으로 인해 사업주들이 노동자 통상임금의 8~20%를 숙식비로 뺄 수 있음.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협의를 하여 동의서를 쓰게 되어 있지만 노동자 개인이 서명을 안하고 버티기는 어려움. 특히 농업에서 문제

-> 임금전액불지급 원칙 위반

- 퇴직금은 '출국만기보험' 을 들어서 고용기간 이후 지급받는데, 2014년에 '출국 후'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꿔서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보험금액과 실제 퇴직금액의 차액이 큰데, 따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해서, 받기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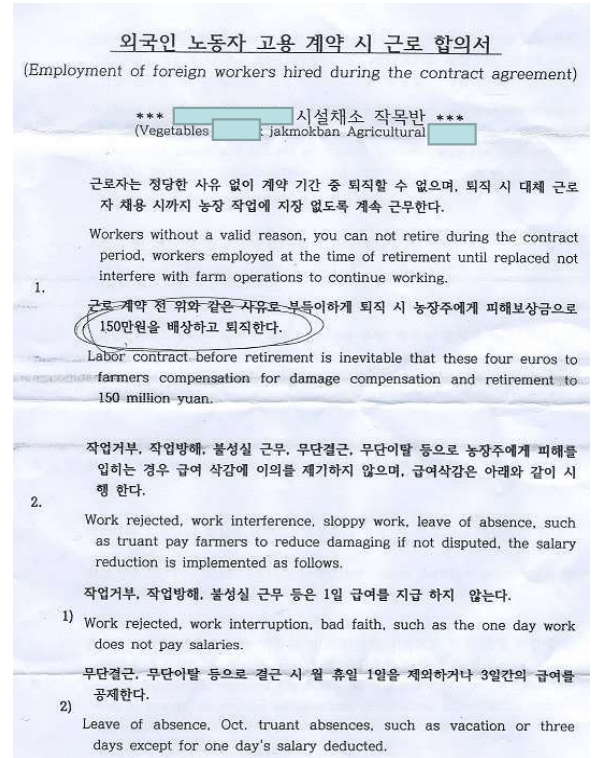


번호	보험의 종류	보험가입주체	비용	담당 보험사
01	출국만기보험	사업주	고용허가서의 월 평균임금의 8.3%	삼성화재보험
02	임금채불보증보험	사업주	16,000원	서울보증보험
03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	나라별 40만원~60만원	삼성화재보험
04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별	삼성화재보험
05	고용보험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06	산재보험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07	건강보험	사업주		국민건강보험공단
08	국민연금	사업주		국민연금공단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 무권리의 일회용 노동자 (4)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착취

-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한달에 휴일 평균 2일 (근로기준법 63조의 예외조항 문제)
- 노동자가 기록한 노동시간의 불인정 문제
- 열악한 숙소(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농막)로 인한 주거환경 위험
- 숙식비 과도한 징수
-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문제
- 어업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노동법적용), 선원법 적용 노동자(E-10)로 나뉨. 둘다 열악하긴 마찬가지
-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주 하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직장건강보험 가입 불가능. 2019년 7월부터 지역건보 가입,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부과 (2022년에 약 14만원)



열악한 기숙사 문제

-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처음 입국하는 이주노동자가 셋방을 얻기는 어려움. 또한 언제 어느때라도 생산에 동원할 목적으로 사업주는 사업장 가까이에 이주노동자 숙소를 두기를 원함.
- 수십 년전부터 이주노동자 기숙사의 열악함이 문제제기됨. 2020년 캄보디아노동자 속행씨가 포천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영하 20도 날씨에 사망한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음.
- 컨테이너, 샌드위치 패널, 조립식 가건물 등 임시 가건물 금지 필요.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춘 것
3.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춘 것
4.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춘 것
5.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것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2.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하도록 할 수 있다.
 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
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다. 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 제58조(기숙사의 면적)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7. 9.>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춘 것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414번길 105 소재 엠제이테크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21 소재 정한기업



- 공장안 컨테이너 기숙사
- 계약서에는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기숙사비로 15만원 공



- 길가에 인접한 공장 내 컨테이너 기숙사
- 소음도 심각

경남 창원군 김곡면 낙동로 1614-25 소재 농장

- 샌드위치 패널 기숙사

- 화장실은 야외 플라스틱 간이 화장실. 여성노동자들에게 안전하지 않고 위생적이지 않음.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432 소재 유화텍스



경남 밀양시 산외면 산외남로 158-17 비닐하우스

- 문이 없고 커튼만 있는 여성노동자 샤워실, 야외 간이 화장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 무권리의 일회용 노동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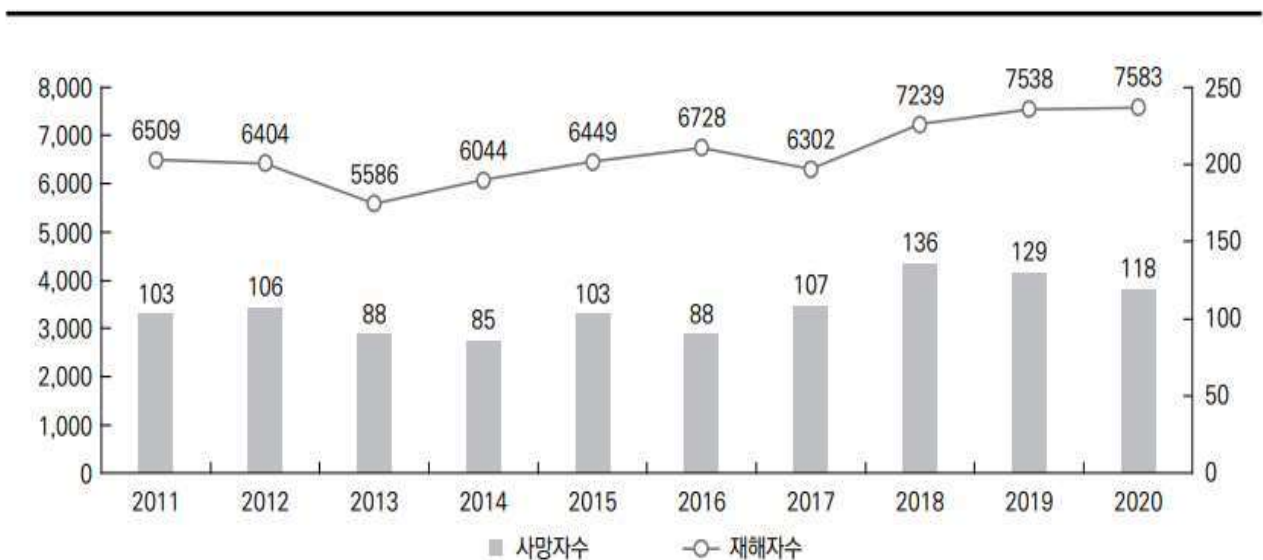
#위험의 이주화, 3D->4D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총 계	6,044	85	6,449	103	6,728	88	6,302	107	7,239	136	7,538	129
광 업	2	0	5	0	7	1	3	0	6	0		0
제조업	3,603	39	3,554	41	3,499	38	3,075	42	3,277	49	3,430	49
전기·가스·증기 및수도사업	0	0	1	0	0	0	1	0	1	0		0
건설업	1,349	35	1,750	53	1,987	40	1,947	51	2,384	61	2,261	52
운수·창고 및 통신업	37	1	30	0	31	0	27	0	32	1		
임 업	18	1	15	0	23	0	28	1	18	0		0
어 업	20	0	13	0	12	0	22	1	21	1		
농 업	82	2	85	3	117	1	102	2	136	7		
금융및보험업	1	0	0	0	0	0	0	0	0	0	0	0
기타의사업	932	7	996	6	1,052	8	1,097	10	1,364	17	1,847	17

* 재해자수는 사망자를 포함하고 있음 * 19년도통계 기타는 제조, 건설 제외 나머지 합임.

2020년은 이주노동자 사망자 총 94명 발생(전체의 10.7%)/ 2021년에는 전체의 11.2%

이주노동자 산재 발생 추이



보건사회연구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정책 과제(2021)

위험의 이주화,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문제 심각

이주노동자 사망 현황 2014년~2019년 7월 기준



※근로복지공단, 보험회사에서 사망으로 인정받아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자료: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청년 이주노동자들의 돌연사 문제

끊이지 않는 질식 사망 사례

- 영세 사업장의 안전설비, 안전장비 획기적 개선 필요
- 모국어로 하는 현장 안전교육
- 산재보험 사각지대 없게 정책 개선
- 의료접근권 개선, 건강보험 차별 개선 등

미등록체류자의 인권 문제



쉽게 미등록으로 내몰고 범죄자로 규정하는 법무부의 단속 정책

- 2018년 건설현장 단속으로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탄저테이 씨 사건,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후 이주노동자 사망은 국가 책임이라는 결론 >>> 단속반원에 대한 징계와 공식 사과 권고했으나 무응답
- 지난 10여년 동안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탄저테이 씨를 포함해 공식 보고만 11명에 달함. 반인권적 단속추방의 문제, 합법화의 필요성

미등록체류자 발생 원인은 제도와 구조의 문제

-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이주노동 제도 하에서 쉽게 비자를 잃을 수 있음. 구직등록기간(1개월), 구직기간(3개월) 넘기면 비자 박탈
- 사업장 내에 분쟁이 생긴다거나 이주노동자가 처우 개선 요구시 사업주가 이탈신고를 하면 비자 잃을 수 있음
- 사업장에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 육설과 폭언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장 변경마저 제한되어 있어서 결국 사업장을 그만두면 비자 잃게 됨.
- 짧은 체류 기간으로 인해 노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서 초과체류를 하면 비자 잃게 됨.
- 이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이주민들이 비자 없이 체류하고 노동하는 미등록 이주민이 될 수 있음.
- 미등록체류는 형사범위반이 아니며 범죄자가 아님.



이주노동자 없이 한국 경제, 산업이 운영될 수 없다



[지방소멸에 맞서다]⑥ "이젠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산업도시 울산 안 돌아가죠"

송고시간 | 2023-06-19 07:00

인구 감소에 젊은층 제조업 이탈까지...울산은 '노동력 비상' 외국인 노동자들이 빈자리 채워...통역·맞춤형 식단 제공하며 '귀한 손' 대접 "영주권 확대 등 외국인 정착 속도도 법제도 개선해야"

[※ 편집자 주 = 2010년대 중반 지역소멸론이 제기된 당시 79개이던 '소멸 위험' 지역은 올해 118곳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이제 그 그림자는 대도시까지 드리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암울한 현실만을 얘기하는 이때 온 힘으로 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맞서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인구 유지에 발 벗고 나서는 그곳, '지방소멸에 맞서서' 그곳들이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취재해 매주 1번씩 기획 기사를 송고합니다.]



HD현대중공업 협력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연합뉴스 구독중

"외국인근로자 없으면 농사 못지어요"

입력 2010.12.14. 오전 9:21 | 수정 2010.12.14. 오전 10:00

👍 1



외국인 어업 노동자 없으면 밥상에 생선도 없다

이동원 기자 (id@idn.com) | 2022-02-02 08:01:15 | 5분 0초

니코 씨, 11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해 거제시 장목면 수산업체에서 조업 경남에 이주노동자 5300여 명 통역·안전·거제 낚아서 중사 포로나로 인력 구하기 어려워 방역 조치로 입국 정지와 추진

오늘 밥상에 오른 생선을 잡은 이는 외국인 어선원인지도 모른다. 국내 수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고령화 하고 신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족한 입수준 외국인인들이 채우고 있다.

수산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전국적으로 4만 명을 훌쩍 넘는다. 이 가운데 어업까지 경남에는 5300여 명이 어선과 양식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이제 외국인 어선원 없이는 '잡는 어업도, 기르는 어업도' 할 수 없다. 어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국내 이주 어선원 현황을 살펴봤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니코 씨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수라바야에서 온 니코(41) 씨는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수산업체 삼랑수산에서 일한다. 그는 어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낚고주 등 농사를 짓다 돈을 벌려고 2011년 우리나라에 왔다.

2011년 당시 니코 씨처럼 가족 생계를 위해 인도네시아 노동자 170명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 중 40명이 거제로 왔는데, 남은 사람은 니코 씨뿐이다. 그와 함께 인력은 벌써 본국으로 돌아갔다.

산업 현장은 이미 다가온 미래... "외국인 없으면 문 닫는다"

[미래한국과 이민] ⑥반려·시화산단... "외국인 노동자 쿼터 확 늘려야" 인력난에 선제적인 종합 이민 정책 불가피... "국민 설득 과정 필요해"

(서울=뉴스1) 박성희 기자, 박재연 기자, 이정호 기자 | 2023-01-19 09:00 송고 | 2023-01-19 10:45 최종수정

👍 0

반도체 대인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지금 이 속도라면 50년 뒤 대한민국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로 인해 생산인력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 노동력은 부족하고 경제 성장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민 정책을 꺼내놓았습니다. 뉴스1은 우리나라는 어떤 이민 정책을 써야 하는지, 또 이민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등 관련 전문가와 현장에서 듣고 4명의 기획팀에 맡겼습니다.



16일 경기도 시흥시 유공산업단지 전문기업 신명유업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강제단속추방에 맞선 대중적 저항- 2003~2004 농성투쟁

○ 2003년 8월 고용허가제법 국회 통과 -> 자진신고기간 -> 11.15부터 대규모 단속

- 단속추방의 공포, 절망감으로 인해 10여 명 자살 등 목숨을 잃음.
- 전국 각지에서 단속추방 반대, 노동허가제 쟁취, 미등록 합법화를 요구하는 농성
- 평등노조이주지부, 네팔투쟁단 등 민주노총농성투쟁단은 명동성당에서, 외노협농성단은 성공회성당에서, 중국동포와 지원단체들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농성

○ 농성-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의 성장, 연대의 확대

- 대규모 농성투쟁을 통해 매일의 교육, 집회, 연대행사, 토론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가로 성장. 운동 내 연대의 확대, 노동운동 주체로서 인식
- 민주노총 내에서도 이주노동자 활동 확대의 계기
- 2005년 독자적인 이주노조 설립으로 이어짐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표적단속과 강제추방

- 2005년 5월 초대위원장 아스와르 후세인 표적단속
 - 보호소에 1년 가까이 수감되어 있다가 일시보호해제.
 - 활동을 지속하다 2007년 8월 본국 귀환

- 2007년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동시다발 표적단속
 - '이주탄압분쇄비대위' 구성하여 11월부터 2월말까지 농성

- 2008년 5월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표적단속

- 2011년 3월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고용허가비자 취소. 1심 승소 후 G-1비자로 체류하다 2012년 1월 본국 방문, 4월 30일 입국 거부당하고 5월 1일 강제출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10년 만의 합법화

○ 2015년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 2005년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직후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의 반려. 체류비자가 없는 미등록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고 함. 이에 설립신고 반려 취소소송 제기. 2007년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승소.
- 그러나 대법원은 8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계류시킴. 그 사이에 정부는 이주노동자 간부들에 대한 표적단속 지속
- 2015년 6월에 대법원의 합법화 판결.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

-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일구어 온 역사
- 이주노동자 주체의 행동과 노동운동, 사회 인권운동의 지지 연대로 투쟁
- 90년대 인권운동 중심의 이주운동에서 2000년대 이후 노동운동, 이주여성/아동/어선원 등 운동의 세분화와 전문화 동반
- 2000년대 정부 주도의 다문화정책이 주로 결혼이주민 동화정책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늘어나면서 기존 이주노동자 영역 축소, 운동성 약화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은 초기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소극적 반대 입장에서 지지 지원 입장으로, 이후 노조 조직화 확대 입장으로 변화.
- 금속, 공공, 건설, 보건, 서비스, 화학섬유, 대학, 민주일반, 이주노조, 성서공단노조 등 이미 산별노조 등에 이주(배경)노동자는 다양하게 존재
- 한국에서 노동운동, 사회운동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활동을 지속하고 한국 운동과 연계하는 사례들- 이곳에서 활동 참여의 중요성
=> 2023년 민주노총 내에 4천 명 넘게 가입되어 있음. 조직율 0.3% 정도

다양한 이주(배경)노동자



우리는 서울대학교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보조원이에요.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소속입니다. 저는 양문정(가운데)이고요, 두 친구는 조미정(왼쪽), 조은혜(오른쪽)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고 두 사람은 캄보디아 출신이에요. (노동과세계 2020.5.8)



다문화 언어강사인 카자흐스탄 출신의 아마노바 잠자골씨가 4일 서울교육청 앞 학교 비정규직 파업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컷뉴스 2019.7.4)

이주노동자의 주요 투쟁 - 노동권과 인권 쟁취,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허가제 실시



*노동허가제란? 사업주에게 고용의 권리를 줘서 이주노동자를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비자를 주고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인권과 노동권 보장, 장기체류 인정, 가족 초청 가능 등의 '권리 기반'의 제도

함께 인사해요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 “아살람 알라이쿰 ”
- 네팔- “나마스테”
- 스리랑카 – “ 아유보완”
- 태국 – “ 사왓디캅 ” “ 사왓디카”(여성)
- 베트남 - “신짜오”
- 미얀마 - “밍글라바”
- 몽골 - “ 센베노 ”
- 캄보디아 - “쭙립수어 ”
- 인도네시아 – “아빠 까바르 ”
- 중국 - “니하오”
- 라오스 – “싸바이다”

이주노동자는 같은 노동자입니다.
언어와 출신국이 다를 뿐.
이주노동자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이주민과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기

